

麗末鮮初 '私置學堂'의 역할과 성격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과학부 교수, 한국교육사 전공
chungsw@aks.ac.kr

- I. 머리말
- II. 여말 '私置學堂'의 역사적 배경
- III. 조선초기의 사학운동
- IV. 맺음말

I. 머리말

여말선초의 문집이나 실록에서는 ‘私置書齋’, ‘私置書院’, 혹은 ‘私置書堂’과 같은 민간이 개인적으로 운영하였던 학당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당시 관학은 다양한 흥학책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운영을 면하지 못하였고, 12공도를 근간으로 하는 기존 사학의 운영도 침체 일로를 걷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출현한 여러 형태의 ‘私置學堂’¹⁾은 중앙 정치권력으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여말선초에 등장한 ‘私置學堂’은 고려 중기의 사학인 구재학당이나 십이공도와는 성격상 상당한 차이를 드러낸다. 구재학당과 십이공도의 운영은 언제나 국자감 등의 관학과 연동되어 이루어졌고, 고려사회의 귀족제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다. 반면 ‘私置書齋’ 등은 지방에 은거하던 ‘한량’ 신분이거나 유생 출신, 혹은 낮은 신분의 퇴관 관료들이 운영하던 사설 학당이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여말선초에 등장하는 새로운 형식의 ‘私置學堂’은 당시 교육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흔히 여말선초의 흥학운동은 고려조의 왕권강화 정책과 元의 대 고려 정책변화가 일치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의 산물로 이해된다.²⁾ 또한 이색 등이 주도한 여말의 학교정책은 가학적인 학문의 전통과 혈연적인 관계, 지역적인 유대가 착종되어 있는 좌주문생제 등의 폐습을 혁파하는 것에 있었던 것으로 설명된다.³⁾ 그러나 이 시기에 출현하는 여러 형식의 ‘私置學堂’은 향촌 사회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좌주문생제와 같은 귀족제적 요소를 탈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선초의 서재가 국가가 처음 구상한 관학 주도의 과업교육(科業教育) 체계를 대신하였으며, 국가와 향촌세력의 타협에 의하여 관학과 사학이 과업교육의 이원적 체계를 형성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⁴⁾ 그러나 아직까지 여말선초

1) 본고에서 ‘私置學堂’이란 용어는 여말선초의 기록에서 나타나는 ‘私置書齋’, ‘私置書院’, 혹은 ‘私置書堂’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2) 이병휴 외, 「여말선초의 흥학운동」, 『역사교육논집』1(1990).

3) 김호동, 「여말선초 향교교육의 강화와 그 경제적 기반의 학보과정」, 『대구사학』 61(2000).

4) 이병휴, 「麗末鮮初의 科業教育」, 『역사학보』 67집(1975).

의 ‘私置書齋’나 ‘私置書院’이 조선중기 이후 출현하는 서당이나 서원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사료의 제약으로 인해 이 시기 사학설립을 주도한 계층과 그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제 문제에 대해 가설적 수준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여말 ‘私置學堂’의 역사적 배경

1. 고려조 사학활동의 사적 배경

『고려사』의 「私學」조에서는 유독 구재학당만을 소개하고 있다. 당시 관동(冠童)들을 위한 사설의 교육기관이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여타의 민간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고려사』의 「列傳」조에서 단속적으로 민간에서 사사로이 행하던 교육활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성격이나 흐름을 이해하기에는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현존하는 사학 관련 자료 가운데 유독 구재학당에 관한 자료만이 남아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귀족제 사회인 고려사회의 성격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사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사학인 구재학당에 대해 국가의 관여와 지배가 매우 강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가의 지원하에 운영되었다. 최충의 구재학당은 과거를 준비하는 기관이었다. 『고려사』에서는 “후에 과거에 응시하는 자들이 모두 9개 서재에 적(籍)을 두었으므로 이들을 모두 문헌공 학도라고 불렀다”라는 구절이 있어 이를 뒷받침해준다.⁵⁾ 최충의 문헌공도 이외의 11공도는 모두 관료 출신이었다. 『고려사』에서도 “유신들로서 도(徒)를 세운 자”⁶⁾로 기록하고 있다. 시중(侍中) 정배걸(鄭倍傑), 참정(參政) 노단(盧旦), 제주(祭酒) 김상빈(金尙賓), 복야(僕射) 김무체(金無滯), 시중(侍中) 은정(殷鼎), 평장(平章) 김의진(金義珍), 낭중(郎中) 박명보(朴明保) 등 모두 당시 권력의 핵심층이 그 운영을 담당하였다.

5) 『高麗史』 列傳(8) 崔沖.

6) 『高麗史』 志(28) 選舉(2) 學校, “又有儒臣立徒者十一.”

당시 사학은 고려의 귀족계적 요소를 강화하는 한 수단으로 운영되었다. 심지어 “각 도(徒)의 유생 중에서 본래 수업(受業)하던 스승을 배반하고 다른 도에 옮겨 속한 자는 동당감시(東堂監試)에 응시하지 못한다”⁷⁾라고 하여, 사학을 근간으로 하는 좌주문생제에 대해 국가가 강력한 지원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당시 국가의 교육정책이 사실상 12공도에 의해 좌우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한 모든 도(徒)의 도회(都會)를 사실상 국가감에서 관장하거나, 각 도(徒)의 교도(教導) 중에서 성실한 자는 골라서 관학의 학관으로 임명하는 특전을 주는 행위들은 당시 사학과 관학의 긴밀한 연관성을 알려준다.⁸⁾

그러면 12공도가 사실상 국가의 강력한 보호와 통제하에 자리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우선 이들 학교가 과거제하에서 기능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12공도 설립의 가장 큰 이유는 유능한 관료의 양성에 있었다. 고려사회에서 과거제의 실시는 사학의 발달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성종조에 흥학입국(興學立國)의 조서를 반포하고 국가감을 설립하도록 한 것은⁹⁾ 지역의 토호세력에 의해 운영되어오던 지방교육을 중앙 집권적 체제로 수렴한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제는 지방의 호족세력들에게 관로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지방으로까지 확대한 계기가 되었고, 사학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졌다. 최종 자신이 주리(州吏) 신분이었던 최온(崔溫)의 자식이었다. 12세기 인종대의 관료인 김수자(金守雌)의 경우, “과거에 급제한 후 금양현회(金壤縣尉)로 도입되었다가 국학학유(國學學諭)로 승진되었으나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문밖에 나가지 않고 전원을 다스리며 소채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면서 날마다 아동들을 모아 글 가르치는 것으로 낙을 삼았다”¹⁰⁾는 기록으로 볼 때, 이 시기 사학활동이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관학과 사학은 상호 보완적 관계임과 동시에 길항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발전해왔다. 국가 재정의 어려움으로 관학이 침체일로를

7) 『高麗史』 志(28) 選舉(2) 學校, “各徒儒生背曾受業師移屬他徒者東堂監試毋得許赴.”

8) 『高麗史』 志(28) 選舉(2) 學校, “東堂監試後諸徒儒生都會日時國子監知會使習業五十日而罷 會接寺三十日私試十五首以上製述者教導精加考覈各其名下注接寺若干日私試若干首論報方許赴會 諸徒教導不離接所勸學者學官有關爲先填差以示褒獎.”

9) 『高麗史』 志(28) 選舉(2) 學校 條.

10) 『高麗史』 列傳.

견자, 숙종 7년(1102년)에는 재정난을 이유로 국자감을 폐지하지는 논의가 조정에서 제기되었다.¹¹⁾ 국가로서는 과거제도를 이용하여 국가 재정의 부담 없이도 사학을 통하여 예비 관료들을 충분히 양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왕권을 강화하고 지배계층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요청되는 시기에는 국가에서 다시 관학의 정비에 힘을 기울였다. 특히 예종(睿宗, 1105-1122년)과 인종(仁宗, 1122-1146년)은 관학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여러 노력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국자감을 정비하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국학 7재의 설치, 양현교의 설립, 송나라에 대한 유학생의 파견¹²⁾뿐만 아니라 국자감 재학 3년을 과거 응시자의 의무 규정으로 제도화하였다. 과거제도와 관학교육의 연계 정책은 사학 12도 중심의 주도권을 약화시키고 관학인 국자감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 정책이었다. 뒤이어 인종도 식목도감(武目都監)을 제정하고¹³⁾ 지방에 다수의 향교를 설립하면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¹⁴⁾

13세기 무신정권이 주도하던 시기는 교육의 침체기였다. 당시 무신들이 청요직을 독차지하고, 심지어 군현에 있는 관학의 교관직까지 무신들이 차지하자¹⁵⁾ 교육활동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당시의 사정은 이제현의 다음 글에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문화가 중국과 비등하다고 하였는데 지금 학도들이 모두 중들에게 글을 배우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하였다. 이제현이 대답하기를 “옛적에 태조는 나라를 창건하는 초기에 조금도 쉬일 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차적으로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중략) 그러나 의종(毅宗) 말년에 무인(武人)이 사변을 일으켜 옳고 그르고 간에 사람을 모조리 죽인 관계로 그 위험에서 빠져 난지는 깊은 산골로 도망하여 관복을 벗고 중의 옷을 갈아입어 남은 생명을 부지하였습니다. 신준(神駿), 오생(悟生)과 같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 국가의 법과 질서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공부하기를 지원하는 자들이 나타났으나 배울 곳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모두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 학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공부를 하려는 자가 중에게로 가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고 봅니다.”¹⁶⁾

11) 『高麗史』 志(28) 選舉(2) 學校: 肅宗七年 閏六月 宰相邵台輔等奏 國學養士 糜費不貲 實爲民弊 且中朝之法 難以行於我國 請罷之 不報.

12) 『高麗史』 志(28) 選舉(2) 科舉(2) 科目(2).

13) 『高麗史』 志(28) 選舉(2) 學校 條.

14) 朴贊洙, 「高麗時代의 鄉校」, 『한국사 연구』 42, 45쪽.

15) 『高麗史』 世家, 明宗 3년 10월 壬戌 “自三京四都護八牧以至於郡縣館驛之任並用武人.”

당시 민간에서의 교육은 사실상 승려들에 의해 유지되었던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사실상 붕괴되었던 사실을 알려준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사학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었다.

13세기에 민간에서 운영되던 사학으로 우선 가숙(家塾)을 들 수 있다. 당시 가숙의 교육단계는 동몽을 주 대상으로 하는 초학(初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규보가 남긴 「謝申大丈教授愚息澄」이라는 시에는 이에 관한 몇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들어 있다. 우선 이 시기에는 가숙을 열어 학생들을 모아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하였던 인물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이규보(1168-1241)의 아들 정(澄)을 가르친 사람은 관청의 下隸인 대장(大丈) 신분이었다. 정은 장성한 나이인데도 “解書조차 하지 못하고 밥주머니가 되어 곡식만 축내는” 상태였다. 이 기록에는 우선 관청의 하에 신분이었던 신 대장이 나이 들어 오경(五經) 공부에 매진하여 동몽들이 이를 배우고자 몰려들어 가숙을 열었다는 것이다. 또한 늘그막에 가숙의 훈장을 업으로 하나, 그의 자손들은 이를 발신(發身)의 기회로 삼아 사족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는 암시를 하고 있다. 시에서는 “동몽들이 배우기를 청하면 거절하지 않으니 학생이 숲처럼 모여들어 가숙(書塾)을 이루었네”¹⁷⁾라고 당시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가숙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學子成林’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던 ‘私置家塾’의 활발한 운영은 당시의 피폐한 관학의 사정과 여러모로 비견된다. 이 시기에 관학은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 국자감의 경우 강화 천도 시기에는 강화향교를 국자감 해우로 사용하였고, 20년 가까이 지난 고종 40년(1253)에야 중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규보는 “이제 새로운 도움으로 옮겨 온 것이 벌써 몇 년째인가! 우리 무리들의 옛 규범은 위태롭게 땅에 떨어졌네 [...] ‘鄉’에는 ‘校’가 있고, 집안에는 ‘塾’이 있는데 향차 ‘國’에는 학교가 없다는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¹⁸⁾라고 당시의 부진한 국학교육을 한탄하고 있다.

16) 『高麗史』列傳 李齊賢.

17) 『東國李相國全集』권16 「謝申大丈教授愚息澄」. “童蒙來求不敢拒 學子成林家有塾.”

18) 『江華鄉校志』, 「花浮山鄉校律詩序」. “自卜新京今幾年 吾徒舊範危墜地. 鄉猶有校家有塾 況可國中無是事.”

그러나 원의 지배와 더불어 왕권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자 관학과 사학은 함께 새로운 부흥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흥학운동이 충렬왕대로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원의 지배하라는 제약이 있었지만, 왕권이 관료제의 정점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충렬왕은 왕권강화를 위하여 관료선발체제의 운영과정을 장악하려는 일련의 시도를 한다. 그는 하과(夏課)에 행행(行幸)하거나 ‘經史教授都監’의 설치, 국자생의 관료선발과 같은 일련의 흥학 조치를 시도한다.¹⁹⁾

조정의 이러한 흥학정책은 사학활동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쳐 다양한 강학활동이 나타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예로 13세기 말 충렬왕대의 인물인 최옹(崔雍)은 학도들을 모아 교수하고 있다. 『고려사』에 따르면, 최영(瑩)의 조부인 최옹은 “성질이 재치 있고 음률을 애호하였다. 학도들을 모아 글을 가르쳤는데 제자 중에는 고관대작과 귀족 출신이 많고 빈한한 집 자제들은 적었다”²⁰⁾라고 하여 새로운 흥학운동이 사학의 부활을 불러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원을 통해 주자학적 성리학의 학풍이 유입되자 이 새로운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신진 사대부 세력이 새로운 성격의 사학(私學) 설립을 주도하게 된다.

2. 여말의 ‘私置書齋’와 한량(閑良)

여말의 흥학정책을 주도한 것은 성균관을 중심으로 한 관학이었다. 당시 성리학을 수용하기 시작한 신진 엘리트층은 사학인 12도의 역할을 축소하고 성균관과 향교의 역할을 극대화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충렬왕대에 원으로부터 직접 성리학을 수용한 안향(安珦), 백이정(白頤正) 등과 충선왕대의 이제현(李齊賢) 등은 노재(魯齋) 허형(許衡) 계열의 성리학을 적극 수용하였다. 허형이 추구하는 정치 이상은 민산(民產)을 진흥하고 학교교육을 널리 보급하는 두 가지 사항을 ‘요순(堯舜)의 도’로 삼는 것에 있었다.²¹⁾ 성리학의 보급을 선도한 것은 관학인 성균관이었다. 충숙왕 12년의 기사에서 “학교는 풍화의 근원이니, 엄격히 권리를 가하여 탁용에 대비하라”는 명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전해주는

19) 이병휴, 「여말선초의 흥학운동」, 『역사교육논집』 제13, 14집, 490쪽.

20) 『高麗史』 列傳.

21) 김태영, 「려말선초 성리학 왕정론의 전개」, 『조선시대사학보』 14(2000).

것이다.²²⁾

성균관을 중심으로 한 흥학운동은 사학과 외방의 향교로도 확산되었다. 공민왕 원년에 “12도와 동서학당을 수리하여 생도를 양육하고, 일경(一經)이라도 능통한 자는 녹명(錄名)하여 아뢰도록 하라”는 명을 내리는 것이나²³⁾, “안렴사로 하여금 향곡의 인재를 발굴하여 천거하도록 하였다”라는 기록과²⁴⁾, 공민왕 12년에 “성균, 12도, 동서학당과 제주군의 향교에 명을 내려 교육을 엄하게 하도록 할 것과 또 이곳에 속한 토전(土田)과 인구로써 혹 호강(豪強)에 겸병된 바가 있을 때는 이를 분별하여 섬학전(瞻學田)으로 환원시키도록 하였다”라는 기사는 모두 흥학운동의 일환이었다.²⁵⁾

관학을 중심으로 교육개혁을 시도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은 목은 이색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그는 사학 12도를 국학의 하부로 흡수하여 편제함으로써 국학 중심의 교육개혁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색의 정책은 결국 사학과 관학을 일원화하고, 사학인 12도를 성균관의 하위조직으로 두고, 종당에는 학교제도와 과거제도를 일원적으로 통합하지는 것이었다.²⁶⁾ 그는 성균관 대사성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성균관의 부흥을 꾀하였고, 마침내 사학 12도는 공양왕 3년에 혁파되어 공학기관인 5부학당으로 편제되었다.²⁷⁾ 사학 12도의 혁파는 기존 권문세가 중심의 사학 운영체제가 지닌 한계를 노정하는 것이었고, 필연적으로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발달한 새로운 형식의 사학체제가 대두될 필요성이 있었다.

동시에 관학의 교육과정도 성리학 중심으로 묶어 신진사대부들에게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였다. 이에 대해 『고려사』에서는, 이색은 성균대사성으로 있으면서 생원(生員)을 증원하고 경학 학자들인 김구용(金九容), 정몽주(鄭夢周), 박상충(朴尙衷), 박익중(朴宜中), 이승인(李崇仁) 등을 교관(敎官)으로 겸임시키고 경서를 교수하자 신진 사대부들이 결집하였고, 정주(程朱) 성리학은 이때

22) 『高麗史』 志(28) 選舉(2) 學校.

23) 『高麗史』 志(28) 選舉(2) 學校.

24) 『高麗史』 志(29) 選舉(3) 銓注.

25) 『高麗史』 志(28) 選舉(2) 學校.

26) 『高麗史』 列傳 이색.

27) 『高麗史』 列傳 정몽주.

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⁸⁾ 조준도 공양왕 원년에 5도에 교수관을 분건하여 각 군현의 학정(學政)을 살피되 “자제들로 하여금 항상 사서오경을 읽도록 하고 사장(詞章)의 학습은 불허한다”는 정책으로 성리학 보급을 구체화하였다.²⁹⁾

그러나 이러한 본래 의도와는 달리 감시(監試)는 권문세족의 출사로서로 활용되었다. 우왕 11년(1385) 3월에 실시된 감시에서는 윤취(尹就)가 국자감시를 주관하였는데, “이때 선발된 사람은 모두 젓먹이 아이들(乳臭之童)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비난하여 ‘粉紅勝’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아이들이 분홍색 옷을 입기 좋아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난맥상이 노정되었다.³⁰⁾ 여말에는 이렇게 관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흥학운동을 기획하였지만 결국에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혼란이 변화의 발목을 잡았다. 우선 국가재정의 파탄으로 향교 건립의 물적 기반의 확보가 쉽지 않았다. 향교도 시설 부족으로 인해 생도들을 민간의 정사(精舍)에 모아 가르치는 수준이었다. 이천향교의 경우, 이천읍이 복원된 1388년 이듬해에 감무(監務) 이우가 안흥 정사에 학생을 모아 학장을 두어 가르쳤다.³¹⁾ 외방 향교의 경우, 조선왕조의 성립과 더불어 비로소 ‘一邑一校’의 천명과 함께 불교의 물적 기반을 향교의 기반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정책이 실시됨으로써 향교가 확충될 수 있었던 것이다.³²⁾

따라서 여말의 혼란된 상황에서 교육은 실제적으로 사학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기록에서 12공도를 대신할 다양한 형식의 ‘私置學堂’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당시 민간에서 운영하던 사학으로서는 서재(書齋)가 가장 대표적이었다. 선초에 권근은 고려시대의 서재 운영에 대하여 매우 주목할 만한 진술을 하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선초 보다는 오히려 고려시대에 서재 운영이 활발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길창군 권근(吉昌君 權近)이 상서하였는데, 전조에서는 외방에 있는 한량유신(閑良儒臣)이 私置書齋를 두어 후진을 교훈하여, 스승과 생도가 각기 편안함을 얻어서 그 학업을 이루었는데, 지금에는 사유(師儒)가 간혹 다른 고을의 교수가 되어, 가족과

28) 『高麗史』 列傳 이색.

29) 『高麗史』 志(2) 學校.

30) 『高麗史』 志(28) 選舉(2) 科目(2).

31) 김호동, 「여말선초 향교교육의 강화와 그 경제적 기반의 확보과정」, 『대구사학』 제61집.

32) 김호동, 위의 논문.

떨어지게 되고 생업을 폐하게 됨으로써 모두 구차히 면하려 하고, 생도는 강제로 향교에 나오게 하여 편안히 공부를 하지 못하고, 수령이 혹은 서사(書寫)의 일로써 사역을 시키니, 이름은 권학(勸學)이라 하나 실지는 폐이(廢弛)됨이 많습니다. 이제는 외방에 있는 유신이 사사(司) 서재를 두고 교훈하는 자는 감히 다른 고을의 교수로 정하지 말도록 하고, 생도도 강제로 향학에 나오지 말도록 하며, 감사와 수령이 권면을 가하여, 각기 편안히 살면서 강학하여 풍화를 돕게 하소서.³³⁾

위의 글에서 특기할 사실은, 우선 서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외방에 있는 한량유신(閑良儒臣)이라는 점이다.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서재를 운영하던 한량은 무직사관(無職事官)으로서의 한량 계층이 아니라, 외방에 거주하는 무역(無役) 사족자제로서의 한량 계층인 것으로 이해된다.³⁴⁾ 서재를 운영하던 이 한량들은 지방의 세력가라기보다는 사족신분층 중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계층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때 이들에 대한 군역의 부과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불분명하나, 선초에 들어 이들을 향교의 교수로 임명한 것은 군역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공민왕 때의 인물인 나홍유의 경우에도 입사하기 이전에는 “경서와 역사를 상당히 공부하였으나 여러 번 과거에 응시해 급제하지 못하고 글방을 차리고 어린이들을 가르쳤다(開塾舍以訓童蒙)”고 한 것으로 보아 사족 중에는 이렇게 생계를 위해 동몽교육에 종사한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⁵⁾

이 시기 서재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개인의 강학공간으로 활용하는 ‘精舍’型 서재였다. 여말의 대유 도은(陶隱) 이승인(李崇仁, 1347-1392)에 의하면 가숙은 없어지고, 서재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서재는 외방의 한량유신이 생도교육을 위해 운영하는 서재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옛 사람들이 학업을 익히는 데는 반드시 그 장소가 있었다. 나라에는 학(學)이 있고, 향당에는 상(庠)이 있으며, 술(衛)에는 서(序)가 있고, 가(家)에는 숙(塾)이 있었던 것과 같은 경우가 그것이다. 가(家)의 서숙(書塾)이 폐한 뒤부터는 재사(齋舍)가 생겼다.

33) 『太宗實錄』 7년 3월 戊寅, “前朝之時, 在外閑良儒臣, 私置書齋, 教訓後進, 師生各得所安, 以成其學. 今者師儒, 或爲他州教授, 遠離家屬, 廢棄生業, 皆欲苟免; 生徒逼令赴其鄉校, 不得自便受業, 守令或役以書寫之務, 名爲勸學, 實多廢弛. 自今在外儒臣, 私置書齋教訓者, 毋敢定爲他州教授; 生徒毋令強赴鄉學; 監司守令乃加勸勉, 使各安居講學, 以裨風化.”

34) 한량에 관해서는 한영우, 「麗末鮮初 閑良과 그 지위」, 『한국사연구』 4집(1969).

35) 『高麗史』 列傳(27) “骨貌(輕佻善談諧 頗涉書史屢擧不第開塾舍以訓童蒙.”

이미 ‘재(齋)’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미 이름을 지었으니 그 이름에 알맞도록 수업하려 하는 것은 이 재에 사는 자가 이름을 붙인 의미에 알맞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학업에 유익됨이 어찌 없겠는가. 나의 벗 예문 응교(藝文應教) 서원(西原) 정만석(鄭曼碩) 씨가 그가 사는 집에 ‘복재(復齋)’라는 현관을 걸고 나에게 기문을 요구하였다.³⁶⁾

위의 기록만을 근거로 할 때, 14세기 중엽 이후에는 가숙(家塾)이 사라지고 그 역할을 서재가 대신하고 있었다. 가숙이 폐지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의 기록만을 가지고는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권문세가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독서당(獨書堂) 성격이 아닌 가 짐작된다. 따라서 이 시기 서재는 종래 가숙이 지닌 폐쇄적이고 개별적인 강학공간이 아니라, 주로 퇴관한 문인계층이 설립한 개별적인 수양공간이자 동시에 다수의 문인들이 강학하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나타나는 각종 ‘私置學堂’은 아직 고려조의 독특한 문화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의 민적(閔頤) 관련 기사에는 당시 14세기 초 고려사회의 매우 독특한 교육 풍속을 소개하고 있다. 민적은 찬성사 민종유(閔宗儒, 1245-1324)의 아들로써 충혜왕(忠惠王) 때에 진현관 대제학(進賢館大提學), 지춘추 관사(知春秋館事)로 임명되었다. 그의 아동기의 공부과정에는 유불선의 세 요소가 공존하고 있어 흥미롭다.

나라 풍속에 어린 아동들은 으레 중에게서 구두법(句讀法)을 배우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면수(面首)란 것이 있어서 중이든 속인이든 간에 모두 그를 받들어 선랑(仙郎)이라 불렀는데 따르는 자가 때로는 천 명에 이르는 때도 있었다. 그 풍속은 신라에서 시작된 것이다. 민적은 10세 때에 집에서 나와 절에 가서 글을 배웠는데 천성이 영민하여 한 번 배우면 곧 그 뜻을 환하게 알았다. 눈썹이 그린 듯하였고 풍채가 아름다웠으므로 보는 사람들이 모두 그를 사랑하였다. 충렬왕(忠烈王)이 그 소문을 듣고 불러보았는데 궁중에서는 그를 국선(國仙)이라고 불렀다.³⁷⁾

물론 당시로서는 절에서 글을 배우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고려시대에

36) 『陶隱先生文集』 권4 「復齋記」. “古之人肄業必有其地. 若國之有學. 黨之有庠. 術之有序. 家之有塾是已. 自家塾之廢而齋舍作焉. 夫既齋而名之. 既名而稱述之. 蓋欲居是齋者思有以稱其名齋之義焉. 則其於肄業. 豈不有所增益者哉. 吾友藝文應教西原鄭曼碩氏. 扁其所居曰復齋. 求余文記之.”

37) 『高麗史』 列傳(21) 閔宗儒.

는 사학의 발전은 사찰과 상당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었다. 13세기 전기에 활동하였던 최자(1188-1260)의 『補閑集』에도 “십이도의 관동들이 매년 여름이면 산림에 모여서 학업을 익히다가 가을이 되면 파했는데 용흥사와 귀법사에 많이 머물렀다”³⁸⁾라는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앞의 인용문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14세기 초까지 신라 화랑도의 유제인 ‘仙郎’, ‘國仙’ 등의 유제가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민간사회는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전일적으로 지배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시기 학교의 성격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III. 조선초기의 사학운동

1. 선초의 교육정책과 사학의 운영

조선의 건국과 함께 국가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관학의 부흥이었다. 교육을 관학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는 태조의 즉위교서에서도 명백히 나타난다. 교서에서는 “중양에는 국학과 지방에는 향교에 생도를 더 두고 강학을 힘쓰게 하여 인재를 양육하게 할 것이다. 그 과거의 법은 본디 나라를 위하여 인재를 뽑았던 것인데, 그들이 죄주니 문생이니 일컬으면서 공적인 천거로써 사적인 은혜로 삼으니, 매우 법을 제정하 뜻이 아니다”³⁹⁾라고 하여 관학을 중심으로 과거제를 운영하여 공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정책의 우선권을 둘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뜻은 정도전에 의해 좀 더 명확하게 제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양에 성균관을 설치하여 공경·대부의 자제 및 백성 가운데서 준수한 자를 가르치고, 부학 교수(部學教授)를 두어 동유(童幼)를 가르치며, 또 이 제도를 확대하여 주·부·군·현에도 모두 향학(鄉學)을 설치하고 교수와 생도를 두었다. 병률(兵律)·서산(書算)·의약(醫藥)·상역(象譯) 통역(通譯) 등도 역시 이상과 같이 교수를 두고 때에 맞추어 가르치고 있으니, 그 교육이 또한 지극하다.⁴⁰⁾

38) 『補閑集』 卷中, “十二徒冠童十二徒冠童 每夏會山林肄業 及秋而罷 多寓龍興歸法兩寺.”

39) 『太祖實錄』 1년 7월 丁未.

40) 『삼봉집』 제13권 「朝鮮經國典上」 禮典 學校.

조선 개국과 더불어 학제의 근간을 제시하는 『조선경국전』에서도 사학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당시 정책의 최우선은 빨리 물적인 기반을 확보하여 ‘一邑一校’의 원칙에 의해 외방 향교를 완비하는 것이었다. 태조 3년에 도평의사사에서 제주에 “교수관(教授官)을 두고 토관(土官)의 자제(子弟) 10세 이상을 모두 입학시켜, 그 재간을 양성하여 국가의 시험에 응시하게 하자”⁴¹⁾고 제안하자, 이에 바로 동의할 정도로 관학체제의 정비에 관심을 기울였다. 심지어 “외방에 있는 유신이 사사로이 서재를 두고 교훈하는 자는 감히 다른 고을의 교수로 정하지 말도록 하고, 생도도 강제로 향학에 나오지 말 것”⁴²⁾을 주청하는 권근의 글에서 나타나듯이 당시의 조정은 이미 운영되던 기존의 사학체제를 관학체제 속으로 수렴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였다. 즉, 개국과 더불어 고려시대 한량유신들이 각자의 고향을 근거지로 하여 서재를 열고 후학들을 교육시키던 관례를 허물고 근거지가 없는 타지의 향교에 교수관으로 임명하고 생도도 강제적으로 향교에 편입하자 오히려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된 저간의 사정을 말해주고 있다.

태종대에는 모든 교육제도와 운영의 중심을 성균관에 두도록 하였다. 태종 11년(1411)에는 예조에서 송의 제도를 본받아 외학제(外學制)의 시행을 건의하였다. 즉, 외학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 태학으로 올리고, 태학에서는 국자궐주(國子祭酒)로 학사(學事)를 총괄하여 다스리게 하자는 것이다. 즉, 10세 이상이 되면 학당에 나오게 하고 15세가 되어 소학(小學)의 공부가 성취되면 차례로 성균관에 승진시키고, 성균관에는 항상 1백 사람을 양성하도록 제안하였다. 권과(勸課)하는 방식은 송(宋)나라 제도에 근거하여 성균관으로 하여금 그 학(學)을 총괄하여 다스리게 하여, 성균관 식(式)에 의하게 하고, 성균관의 분교 학당(分教學堂)은 오로지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만을 위임하여 다른 사무는 겸하지 말게 할 것”을 주청하였다.⁴³⁾ 이것은 지방과 사학의 교육을 사실상 성균관이 통제하도록 구상한 것이다.

41) 『太祖實錄』 3년 3월 丙寅, “乞自今置教授官, 土官子弟十歲以上, 皆令入學, 養成其材, 許赴國試.”

42) 『太宗實錄』 7년 3월 戊寅, “自今在外儒臣, 私置書齋教訓者, 毋敢定爲他州教授; 生徒毋令強赴鄉學; 監司守令乃加勸勉, 使各安居講學, 以裨風化.”

43) 『太宗實錄』 11년 11월 癸酉, “勸課之法, 亦依宋制, 使成均總治其學, 令依成均館式, 成均館分教學堂, 則專委教訓, 毋兼他務.”

그러나 문제는 관학의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에 있었다. 특히 교육을 책임지는 사장(師長)에 대한 문제였다. 당시 성균관이나 오부학당에 근무하는 훈장이나 사장에 대한 사회적 대우는 매우 열악하였다. 이 시기 예조의 정문(正文)에서는, “학교는 풍화의 원천으로 예의를 먼저 계도하는 곳입니다. 근래에 학생들이 광망한 자가 많아서 비록 사장을 본다 해도 또한 존경 겸양하는 예의가 결여되고 있어 마음과 행동의 교양을 미리 쌓지 않을 수 없다”⁴⁴⁾라고 당시의 세태를 알려주고 있다. 태종대에도 교수와 학장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하여 전라도 지고부군사(知古阜郡事) 유유령(柳維寧)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서를 올린다.

“그욕이 생각하건대, 인제는 풍속을 교화하는 근원인데, 인재를 교양하는 것은 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조에서 주부(州府)에는 교수관을 파견하고, 군현에는 학장을 두었는데, 학장이 된 자가 혹은 부임하지 않으니, 또한 효력이 없습니다. 드디어 군현으로 하여금 한자 학교라는 이름만 있고 실효가 없으니, 그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교수와 학장은 공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으나 학장은 곧 종신토록 천전(遷轉)하는 길이 없습니다. 교수와 학장은 공이 같은데 상이 다른 것은 진실로 성대(盛代)의 하나의 결함입니다. 빌건대, 문관 6품 이상으로 하여금 각각 이는 바 삼경(三經)에 능통한데도 두 번이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였으나 남의 스승이 될 만한 자를 천거하게 하여 유학훈도(儒學訓導)가 되는 자격을 허락하소서.”⁴⁵⁾

군현에 파견된 학장은 한번 임명되면 종신토록 그 직위에 있음으로 인해 관료로 입신하고자 하는 인물들은 모두 기피하는 것이 당시의 실정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문관 6품 이상의 추천을 받아 삼경에 능통한 한 인물 중에서 과거에 미입격된 인물을 뽑아 유학훈도가 되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 대신 사학은 관학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방에 있는 유신이 사사로이 서재를 두고 교훈하는 자는 감히 다른 고을의 교수로 정하지 말도록 하는 등의 보호책을 강구하였다.⁴⁶⁾

44) 『世祖實錄』 1년 9월 庚辰, “學校, 風化之源, 禮義相先之地. 近來學生類多狂妄, 雖見師長亦闕敬讓, 教養心行不可不預. 自三館未得擅罰以來, 學生益無所忌, 驕縱尤甚.”

45) 『太宗實錄』 14년 6월 癸卯, “竊念, 人材風化之源, 教養人材, 在於學校. 故本朝於州府則遣教授官, 郡縣則置學長. 爲學長者, 或不赴任, 亦不効力, 遂使郡縣, 徒有學校之名, 而無實效. 其故無他, 教授, 學長功不差殊, 而學長則終身無遷轉之路也. 古語曰: “有功不賞, 雖唐, 虞之治, 不可有爲.” 教授, 學長功同賞異, 誠盛代之一次也. 乞令文官六品以上, 各舉所知通三經, 再舉不中, 可爲人師者, 許資階爲儒學訓導.”

46) 주) 43 참고.

한편 세종은 즉위한 후 관학교육이 부진한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우선 그 부진의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하였다. 특기할 사실은 관학과 사학을 서로 대립적인 관계로 파악하지 않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는 풍속과 교화의 근원이니, 서울에는 성균관과 오부 학당을 설치하고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하여, 권면하고 훈화한 것이 지극하지 않음이 없었는데도, 성균관에서 수학하는 자가 오히려 정원에 차지 않으니, 생각건대 교양하는 방법이 그 방법을 다하지 못한 때문인가. 사람들의 추향(趨向)이 다른 데 좋아하는 점이 있는 때문인가. 그 진작하는 방법을 정부와 육조에서 검토 연구하여 아낄 것이다. 더구나 향교의 생도는 비록 학문에 뜻을 둔 사람이 있더라도, 있는 곳의 수령이 서역(書役)을 나누어 맡기고 빈객을 응대하는 등, 일에 일정한 때가 없이, 사역하여 학업을 폐하게 하니, 지금부터는 일절 이를 금지시키고, 그 유사들이 사사로이 서원을 설치하여, 생도를 가르친 자가 있으면, 위에 아뢰어 포상하게 할 것이다.⁴⁷⁾

세종의 교육 문제에 대한 진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우선 성균관이 외면받는 이유를 찾고, 그 진흥방안을 정부에서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부진의 원인이 단순한 교육방법에서 기인된 것인지, 아니면 관생들의 학문적 요청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지를 검토하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향교의 부진은 관권에 예속된 교육활동에서 찾고 있다. 생도들에게 수령들이 서역을 시키거나 접빈객 등의 사역을 시킴으로써 향교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유사들 중에서 사사로이 서원을 운영하여 생도를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포상하라는 것이다. 즉, 사학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다. 세종은 도호부 이하에는 교도를 임명하지 않고 “향리의 나이 지긋하고 덕망이 뛰어나 사표가 될 만한 사람으로 학장을 두는”⁴⁸⁾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세종의 이러한 사학정책에 따라 지방에 ‘私置書院’을 건립하여 학도를 교수한 사례들이 보고된다. 세종 2년 평안도 관찰사의 계문에는, “함중현

47) 『世宗實錄』 원년 11월 己酉, “學校, 風化之源, 內設成均, 五部學堂, 外設鄉校, 勸勉訓誨, 無所不至, 而成均受學者, 尙未滿額. 意者教養之方, 未盡其術歟? 人之趨向, 他有所好歟? 其振起作成之術, 政府六曹講求以聞. 且鄉校生徒, 雖有志學者, 所在守令, 如損分書役, 應對賓客等事, 無時使喚, 以致廢業, 自今一禁, 其有儒士私置書院, 教誨生徒者, 啓聞褒賞.”

48) 『世宗實錄』 원년 10월 丙午, “今新置教導, 廩給之費亦多. 不若以隣鄉年高德邁, 可爲師表者爲學長.” 從之

(咸從縣) 사람 생원 강우량(姜友諒)이 ‘私置書院’을 설립하고 학도를 교수 하니, 전일 하교하신 교지에 따라, 그 이웃 가까운 주군의 교도를 제수하여 표창하게 하소서”⁴⁹⁾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학의 학장을 탁용하여 주군의 교도로 임명함으로써 관학과 사학을 동시에 진흥시키고자 한 의도가 나타난다. 세종의 이러한 정책은 상당 기간 일관되게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 18년에도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타난다. 고려시대와 조선 초의 사학활동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실려 있다.

지성군관사(知成均館事) 허조(許稠) 등이 상언하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삼대의 사람을 가르치는 법은 집에서는 숙(塾)이 있고 당(黨)에서는 상(庠)이 있었으니, 이것은 곧 학문을 처음으로 배우는 선비의 계몽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동방에서는 고려 시대에 한량유사들이 사사roi 서재를 설치하고 어린아이를 가르친 사람이 있었으니, 이것도 또한 집에서는 숙이 있고 당에서는 상이 있었던 유법입니다. 충렬왕 때에 강경룡(康慶龍)이란 사람이 있어서, 집에 거처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그 제자 10인이 모두 성균시(成均試)에 오르게 되니, 익양후(益陽侯)가 이 사실을 아뢰므로 임금은 그가 사람을 가르치는 데 게을리하지 않음을 가상히 여겨, 관리에게 명하여 곡식을 운반하여 그 집에 내려주어 그를 포창했습니다. 우리 성조에 와서 더욱 문교를 닦아 서울에는 국학을 세우고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했으니, 학교의 넓게 설치한 것이 이와 같았으나, 다만 집에는 숙이 있고 당에는 상이 있는 법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사가 사사roi 서재를 설치하고 생도를 가르친 사람을 계몽하여 이를 상주게 하는 법은 《속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생 유사덕(劉思德)이 그 집을 서재로 삼아 어린아이 수십 명을 모아서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또 경상도 용궁(龍宮) 사람 전 감무(監務) 박호생(朴好生)은 사사roi 서재를 설치하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친 것이 대개 또한 10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원컨대 《육전》에 의거하여 특별히 포상을 시행하여 그 근로를 징표(旌表)한다면, 안으로는 국도로부터 밖으로는 주려(州閭)에 이르기까지 이를 보고 감동하여 흥기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예조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서용하고 뒷세상의 사람을 격려하게 하였다.⁵⁰⁾

앞글에서 허조는 우선 상(庠)과 숙(塾)이 초학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49) 『世宗實錄』 2년 9월 己丑, “平安道觀察使啓: 咸從縣人生員姜友諒私置書院, 教授學徒. 請依前日教旨, 除旁近州郡教導以褒之.”

50) 『世宗實錄』 18년 10월 庚午, “知成均館事許稠等上言曰 竊觀三代教人之法, 家有塾, 黨有庠, 此乃初學之士發蒙之所也. 吾東方在高麗, 閑良儒士私置書齋, 教誨童蒙者有之, 是亦家塾, 黨庠之遺法也. 忠烈王朝有康慶龍者, 家居教授, 其弟子十人, 竝登成均試, 益陽侯以聞, 王嘉其誨人不倦, 勅吏載穀, 賜其家以褒之. 及我盛朝, 益修文教, 內建國學, 外設鄉校. 學校之廣如此, 唯家塾, 黨庠之法, 未之行也, 故儒士私置書齋, 教誨生徒者, 啓聞賞之之法, 載諸《續典》. 今儒生劉思德以其家爲書齋, 聚童蒙數十輩, 教誨不倦, 又慶尙道龍宮人前監務朴好生私置書齋, 教誨童蒙者, 蓋亦十餘年矣. 乞依《六典》特行褒賞, 以旌其勤, 則內自國都, 外及州閭, 有所觀感而興起矣. 上令禮曹賑賞敘用, 以勵後人.”

하는 ‘發蒙之所’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이미 앞에서 고려사를 통해 살펴본 바 있지만, 고려시대 후기에는 한량유사(閑良儒士)들이 스스로 ‘私置書齋’를 건립하여 동몽들을 교육하였던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충렬왕 때에 강경룡(康慶龍)이란 사람이 집에 거처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쳐 그 제자 10인이 모두 성균시(成均試)에 오르게 되었던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조에 들어 상(庠)과 속(塾)의 동몽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과, 사학활동을 진흥하는 방안으로, 유사가 사사로이 서재를 설치하고 생도를 가르친 사람을 계문하여 이를 상주는 제도가 《속전》에 기재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세종 19년 기사에서도 “유학 유사덕(劉思德)과 전 감무(監務) 박호생(朴好生) 등이 아이(童蒙)들을 모아서 가르치기를 게을리 아니하여, 그 뜻이 상을 줄 만하니, 《속전(續典)》 및 지성균관사 허조(許稠) 등의 올린 말에 의하여, 이조로 하여금 서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록이 나타난다.⁵¹⁾ ‘사치서원(私置書院)’이나 ‘사치서재(私置書齋)’를 활용하여 지방교육을 진흥하고자 하는 세종의 뜻을 읽을 수 있다.

위의 기록에서 나타나는 유생 유사덕은 그 후 조정에서 ‘興學’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마다 등장한다. 단종 초년에는 유생 마의상(馬義詳) 등 90인이 스승인 사용(司勇) 유사덕을 표창할 것을 청원하는 내용의 기록이 보인다.

사용(司勇) 유사덕(劉思德)의 훈하(訓下) 유생 마의상(馬義詳) 등 90인이 상언하기를, “스승 유사덕이 갑진년부터 시작하여 동몽들을 가르쳐 성효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병진년에 성균관에서 상소하여 청하여 관직을 받았으나, 그러나 서반(西班)은 포폄이 없기 때문에 10여 년 동안 가자(加資)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 등은 애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예조에 내려서 의논하였다. 예조에서 의정부에 보고하여 아뢰기를, “유사덕의 문인들이 무오년 이후부터 생원시·진사시와 문과·무과에 합격한 자가 70여 인이니, 그 공을 상줄 만합니다. 청컨대 가자하여 서용하여서 뒷사람을 권려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⁵²⁾

51) 『世宗實錄』 19년 4월 辛巳, “幼學劉思德, 前監務朴好生等聚會童蒙, 教誨不怠, 其志可賞, 依《續典》及知成均館事許稠等上言, 令吏曹敍用” 從之.

52) 『端宗實錄』 1년 5월 丁卯, “司勇劉思德訓下儒生馬義詳等九十人, 上言曰: “師思德, 自甲辰年, 始教童蒙, 有成效. 故丙辰年, 成均館疏請受職; 然以西班無褒貶, 十餘年未得加資, 臣等不勝憤悶.” 下禮曹議之, 禮曹報議政府以啓曰: “思德門人, 自戊午年以後, 中生員, 進士試及文武科者, 七十餘人, 其功可賞. 請加資, 敍用, 以勸後人” 從之.”

앞의 기록에서 우리는 15세기 전반기에 행해졌던 사학활동에 관해 몇 가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우선 훈장인 유사덕의 교육활동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그는 세종 6년인 갑진년(1424)부터 동몽들을 가르쳐 병진년(1436)인 세종 18년에 그 성과를 인정받아 관직을 제수받고, 그 후 계속 동몽교육에 종사하여 적어도 세조 4년(1460)까지는 훈장을 업으로 하고 있다. 무려 30년 이상을 훈장으로 지낸 이력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즉, 평생 훈장을 업으로 하는 인물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길러낸 인물이 생원시, 진사시와 문과, 무과에 합격한 자가 70여 인에 달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그는 주로 과거 위주의 교육을 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그의 신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성균관의 상소로 사용(司勇)이라는 하급 무반직을 제수받았다. 그러나 그는 서반 신분이었음으로 가자(加資)를 받지 못하였고, 세조 4년에 예조에서는 그가 아직도 행직(行職)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품계에 상당하는 관직인 준직(准職)을 제수할 것을 주청하고 있다.⁵³⁾ 이러한 전후 문맥을 볼 때 그는 유생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한미한 가문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궁(龍宮) 사람 박호생(朴好生)의 경우에는 전 감무(監務)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아 퇴관 관료로 학장으로 종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세종조에는 이 밖에도 ‘私置書院’에 관련 기사가 몇몇 눈에 띈다. 예로 김제(金堤) 전 교수관(交授官) 정곤(鄭坤)은 ‘私置書院’을 세웠는데, 고을 사람들은 물론 타향 사람들도 와서 배우기를 원하는 자이면 다 가르쳐 주었고, 광주(光州)의 생원 최보민(崔保民)이 ‘私置書院’을 세워 생도를 훈도하고 가르쳤다는 내용이 나타난다.⁵⁴⁾ 또한 앞서 언급한 강우량이 ‘私置書院’을 설립하고 교수한 것에 대해 표창한 기록이 보인다.⁵⁵⁾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私置學堂’을 설립한 계층은 전 교수관, 생원 등으로 유학을 공부하는 초급 관료 혹은 생원 출신이 주류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운영의 공로로 인해 하급관료를 제수받을 수 있는

53) 『世祖實錄』 4년 7월 丁酉, “禮曹據劉思德訓生等上言啓: “思德訓蒙有効, 歲丙辰成均館上疏, 授西班牙職, 壬申又以臣等上言, 命陞資敘用, 勿授行職, 而今尚未免行職. 思德勤於教誨, 宜加褒賞, 請令該曹依前受教授準職” 從之.”

54) 『世宗實錄』 2년 1월 庚申, “金堤前教授官鄭坤, 私置書院, 境內與他鄉自願來學者, 無不教訓. 光州生員崔保民, 私置書院, 訓誨生徒.”

55) 『世宗實錄』 2년 9월 己丑, “平安道觀察使啓: “咸從縣人生員姜友諒私置書院, 教授學徒. 請依前日教旨, 除旁近州郡教導以褒之.” 命下吏曹.”

사회적 신분이었다.

그러나 국가로서는 교육을 오로지 ‘私置學堂’에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세종이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인 것은 각 군현에 학장을 임명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이었다. 세종 원년에 허조(許租)는 향학에 교도를 임명하여 월봉(月俸)을 줄 것을 주청한다.

예조판서 허조가 아뢰기를, “향학(鄉學)에 교수관(教授官)이 없는 곳에는 이미 관찰사로 하여금 학장(學長)을 정하여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장은 이미 관인이 아니고 또한 봉급이 없으니, 양식을 싸 가지고 부임하게 되오매, 수차례(戊)에 사는 일처럼 꺼려하니, 이로 인하여 교훈하는 데 게으르게 되오며, 또 배우는 사람들이 그들 벗과 같이 대하고 제자 되기를 부끄러워하여, 학문하는 데 게을리하니, 실로 불편합니다. 우리 국가의 주(州)·군(郡)이 대개 3백여 개나 되는데, 문과 출신자라면 나누어 보낼 수는 없습니다. 원컨대 생원·진사 중에 사표될 만한 사람을 뽑아서 교도로 임명하고, 월봉(月俸)을 주어서 교훈의 길을 넓혀야 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5백 호(戶) 이상의 군·현에는 교도를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⁵⁶⁾

이로 볼 때 세종조까지도 각 군현단위의 향교에 교수관이 파견되지 못하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 있었다. 이에 관찰사가 민간인 중에서 학장을 임명하였으나, 학장은 봉급이 없어 양식을 싸 가지고 부임하는 형국이었다. 이에 세종은 “5백 호 이상 되는 각 고을에 훈도관을 두되, 우선 3관(三館)의 권지(權知)를 파견하고, 생원·진사로서 남의 스승이 될 만한 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고 천거하게 하여, 서울은 예조에서, 지방은 관찰사가 「사서」와 「이경(二經)」으로 시험하여 후보자를 보고한 다음 교수관에 임명하여 보내는 것으로 영구히 정식으로 삼으라”⁵⁷⁾는 명을 하달하였다.

조정에서도 교육의 성패는 교관의 선발 및 관리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외방 교관들에 대한 고찰조건을 강화하여 전최(殿最)에 근거로 삼고, 감사가 이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다. 즉,

56) 『世宗實錄』 원년 12월 壬辰, “鄉學無教授官處, 已令觀察使定學長教之, 然學長既非官人, 又無俸廩, 齋糧趨任, 憚若戍役. 因此惰於教訓, 且學者視之如朋友, 恥爲弟子, 怠於爲學, 實爲未便. 我國家州郡凡三百餘, 文科出身者, 固不得而分差. 願選生員進士可爲師表者, 差教導, 給以月俸, 增廣教訓之道.” 上曰: “然, 五百戶以上郡縣, 可置教導, 予將達于上王.”

57) 『世宗實錄』 1년 11월 乙卯 上命: “五百戶以上各官, 置訓導官, 以三館權知, 爲先差遣. 其生員, 進士可爲人師者, 許人保舉. 京中則禮曹, 外方則觀察使, 四書二經試取, 望報差遣, 永爲恆式.”

1. 교수(教授)와 교도(敎導)가 임명을 받은 후에 즉시 부임(赴任)하지 아니하거나, 비록 부임하였더라도 취임 인사를 마친 후에는 여러 가지로 사고를 핑계하며 피를 부려, 면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죄를 논단(論斷)할 것.

1. 각 고을의 수령은 각기 나아가 배우는 생도의 이름 밑에 취학한 연월과 읽은 경서와 수업한 교관의 성명을 써서, 매양 마지막 달마다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문서에 올려 뒷날 고사에 참작할 것.

1. 관찰사가 지방을 순행할 때 성균관의 예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 강(講)을 시험하되, 성인은 그 의리를 잘 풀어 알아야 하고, 동몽에게는 다만 잘 외는 것만 취하여, 이름을 기록하여 문서에 올려두었다가 성적의 우열을 평정하는 날에 이를 빙고(憑考)하여 시행하게 하고, 성적의 우열을 보고하는 계본(啓本)에는 교관의 이름 밑에 어느 어느 경서를 통달하게 하는 생도가 몇 사람이며, 어느 어느 경서를 잘 외는 생도가 몇 사람이라고 적을 것이다. 관찰사가 사고가 있으면 우두머리 관원과 수령 중에 경서에 통달한 자와 혹은 도내에 거주하는 문관으로 하여금 고시를 보이게 할 것.

1. 각 고을의 수령은 교관의 실지로 출근한 것과 신병(身病)과 휴가 등 사고로 결근한 것을 명백히 마련(磨鍊)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 치부하였다가, 성적의 우열을 매기는 날에 그 근만(勤慢)을 상고하여 아뢰게 할 것⁵⁸⁾ 등이었다.

그러나 조정의 관학에 대한 이러한 진흥책에도 불구하고, 고을의 교도를 모두 생원으로 임명하자 이들은 궁벽한 시골에서 눈가림하여 유호(儒戶)라 일컫고, 군역도 면제되고,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또 학업도 익히지 않으며, 권문에 기대어 자급을 올려 관작 증설의 과람(過濫)이 폐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⁵⁹⁾ 이후에도 세종은 지속적으로 관학의 부흥을 위한 정책들을 입안하였다. 예로 세종 6년에는 형조에서 혁파한 승록사(僧錄司)와 각 사찰의 노비 2명으로 1호(戶)를 삼아, 동·서부 학당에 각각 30호씩 급부(給付)하고⁶⁰⁾, 개성의 학당에 문선왕 제전 6결을 주고 위전 50결을 더 주게 하면서 향교의 진흥을 꾀하고⁶¹⁾, 함길도

58) 『世宗實錄』 4년 11월 丁卯.

59) 『世宗實錄』 7년 2월 甲寅, “各官敎導, 皆以生員除授, 故競求敎導, 就職出謝後, 托故辭避, 媚於鄉曲, 稱爲儒戶, 不兵不農, 又不肄業.”

60) 『世宗實錄』 6년 5월 癸巳, “請將革去僧錄司奴婢及各寺社奴婢, 以二名爲一戶, 於東西部學堂, 各給三十戶” 從之.

도내에 학사를 건축하고 경서를 간행하고, 도내에서 1년간 제용감(濟用監)에 바칠 신세포(神稅布)와 관에 몰수한 범죄인의 재산과 속전으로 받은 전포(錢布)를 가지고 종이와 바꿔서 인쇄하여, 각 고을에 나누어 주는 등의 지원책을 강구하였다.⁶²⁾

이러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관학의 부진은 계속되었다. 따라서 그 부진을 극복할 대안이 다양하게 모색되었다. 그 한 방법이 교육과 과거를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도회(都會)의 활용이었다. 도회는 원래 향교 교생들을 대상으로 고강(考講)을 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춘추 각 50일 1년에 도회 100일을 함께 강학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과거제도로 파악할 수 없다. 세종 11년에는 경상 좌우도에 각각 도회 2개소를 두고 매 1개소마다 40인을, 전라·충청도에 각각 2개소를 두고 매 1개소마다 30인을, 강원도에 2개소를 두고 매 1개소마다 20인을, 황해도·평안도에 각각 1개소를 두고 매 1개소마다 20인을, 함길도에 1개소를 두고 15인을 정원으로 하여, 봄에는 3월 보름 뒤부터 4월 그믐까지 가을에는 8월 보름 뒤부터 9월 그믐까지, 경사(經史)에 통달한 교수나 학문을 좋아하는 생도를 뽑아 모아서, 감사와 수령의 주관하에 도회를 시행하도록 하였다.⁶³⁾

그러나 이러한 관학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세종조에는 평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뚜렷한 성과를 드러내고 있었다. 세종 14년에는 예조에서 신백정(新白丁)의 자제들도 향교에 나아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즉, “신백정들은 이미 평민들과 섞여 살고 서로 혼인하게 되어 균역을 차정하였사오니, 그들의 자제들이 독서를 원하는 자에게는 향학에 나아가게 하옵소서”⁶⁴⁾라고 상언하고 있다. 이 기록으로 볼 때 15세기 초반에는 적어도 향교교육에서는 그 신분적 차별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이 ‘私置學堂’에 대한 관학 교육의 상대적 장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단종대에는 집현전이 학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입안을 담당하

61) 『世宗實錄』 8년 4월 戊辰, “參考平壤府文宣王祭田六結, 儒學院位田一百五十結. 今依此例, 給文宣王祭田六結, 學堂位田, 仍前屬一百結, 加給五十結” 從之.

62) 『世宗實錄』 10년 5월 丁巳, “募僧構學舍, 啓聞賞職, 又募僧刊行經書. 姑將道內二三年濟用監納神稅布及犯罪人沒官財產, 收贖錢布, 換紙以印, 分于各官.”

63) 『世宗實錄』 11년 1월 庚戌.

64) 『世宗實錄』 14년 10월 丁酉, “新百丁, 既雜處平民, 相爲婚嫁, 差定軍役, 其子弟願讀書者, 請許赴鄉學” 從之.

었다. 단종 원년에는 집현전에서 홍학정책에 대해 품의하는 가운데 외방의 학장은 교육에 오래 종사하였고, 그 제자 중에서 성재(成才)한 것이 있는 자는 산관직(散官職)을 제수할 것과, 교수직은 관각(館閣)의 당상·낭청 및 삼관(三館)의 문신으로 하여금 천망(薦望)하게 할 것, 교관 중에서 “경서에 밝고 행실을 닦아서 명망이 있어 제생이 마음으로 복종하는 자는, 비록 치사(致仕)할 나이가 지났더라도 쇠모(衰耗)하여 직사를 폐할 지경에 이르지 않았거든 체임시키지 말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⁶⁵⁾ 논의의 상당 부분이 교수 혹은 학장의 선발과 지원에 관한 논의에 할애되어 있어 당시 관학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유능한 학장을 과연 어떻게 초빙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세조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1. 교관은 모름지기 살고 있는 곳의 근관(近官)에 차견(差遣)하게 하소서.
1. 교도(教導)를 취재(取才)할 때에는 자원에 따라 사서·삼경을 강하게 하소서.
1. 교관들은 늙급(麻給)이 심히 박하고 또 일을 관장하지 않으니, 수령이 멸시하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유생도 또한 공경하여 훈회(訓誨)를 받지 않으니, 금후로는 수령 등이 무릇 찬물(饌物)을 풍족히 갖추어 후대토록 하고 여기는 자는 관찰사가 규리(糾理)하게 하소서.
1. 교관이 훈하(訓下)한 안에서 또 등과(登科)와 생원·진사가 있으면 구례에 따라 진질(進秩)하고, 개만(簡滿)으로 체대(遞代)할 때는 비록 교도(教導)라 하더라도 또한 경직(京職)으로 서용하게 하소서.
1. 제읍의 양가자제로 취학하지 아니하고 한유자(閑遊者)가 자못 많으니, 수령과 교관은 돈독히 권하여 부학(赴學)하게 하고, 그 현저하게 홍학한 효험이 있는 자는 관찰사가 별천(別薦)하되, 만일 학교를 폐이(廢弛)한 자는 계문하여 파출(罷黜)하게 하소서.
1. 학장을 권장하는 법도 또한 교관의 예에 의한다면 관직이 외람하여 일을 거행하기 어려우니, 단지 산관으로만 써서 권장하되 그중에 실효가 탁이한 자는 관찰사의 별천을 따라 임시로 계문하여 서용하게 하소서.⁶⁶⁾

그러나 교관의 자질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다. 심지어 문맹자까지도 향교의 교관에 임명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교관의 문제로 인해 향촌사회에서 ‘私置學堂’의 현실적 필요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었다. 교관의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65) 『端宗實錄』 원년 6월 壬午.

66) 『世祖實錄』 4년 4월 庚辰.

없는 심각한 사태에 이르게 된 연산조 초에 충청도 도사 김일손이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리고 있다.

향천(鄉薦)을 참작해 채용하여 훈도로 삼으소서. 신이 본도에 이르러 주현의 훈도를 두루 시험하여보니, 혹 교생이 두어 경전에 능통한 자가 있는데, 훈도는 한 경전에도 통하지 못하므로 스승이 교생을 가르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생이 도리어 스승을 가르치게 되니, 진실로 탄식할 일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뇌물 청탁으로 말미암아 훈도의 직을 얻어서 균역을 면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각도 감사에게 명하여 제생을 고시하여 경술에 능통한 자를 논계하여, 회강(會講) 취재자(取才者)와 아울러 쓰고, 교육에 공이 있는 자를 감사가 계문하여 현으로부터 군으로, 군으로부터 주부(州府)로, 점차 교수로 승진시켜 사표를 장려하소서.⁶⁷⁾

그의 말대로, “스승이 교생을 가르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생이 도리어 스승을 가르치게 된” 것은 훈도의 직이 균역을 모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태종대와 같이 寺田을 혁파하여 學田에 충당할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유향(留鄉)에게 책임을 지워 풍속을 장려하고 경제소를 독책하여 향풍을 진작시킬 것을 주문한다.⁶⁸⁾ 즉, 새로운 신흥 사족들에게 향촌교육을 담당하도록 유도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관학의 이러한 제반 한계점은 필연적으로 ‘私置書齋’, ‘私置書院’, 혹은 ‘私置書塾’ 등 다양한 형태의 ‘私置學堂’의 설립을 요청하였고, 16세기 이후 새로운 성격의 신흥사족이 주도하는 향촌서당의 등장을 촉구하였다.

2. 조선초기 ‘私置學堂’의 성격 문제

그런데 앞에서 말한 “외방에서 사사로이 서재를 운영하는 유신”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 우선 종래의 서재와 서당, 혹은 서숙 등 사학에 대한 이해가 지나치게 단선적인 논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계의 통설은, 조선전기 사학 운영의 중심은 길재(吉再, 1353-1419)에 두고, 그를 통하여 김숙자-

67) 『燕山君日記』 1년 5월 庚戌, “參用鄉薦, 爲訓導. 臣到本道, 歷試州縣訓導, 或有校生, 能通數經, 而訓導, 不曉一經, 非唯師不能教生, 而生反教師, 良可嘆已, 無他, 由苞苴請托以得, 而苟免軍役故也. 宜令各道監司, 考試諸生, 能通經術者論啓, 與會講者, 取才者, 並用. 有教育之效者, 監司啓聞, 由縣而郡, 由郡而州府, 漸遷教授, 以勵師表.”

68) 상동

김종직-김굉필-조광조 등으로 이어지는 사림 도통의 계보도를 작성하고 있다. 즉, 사림 정신의 정통성을 이 시기 사학교육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길재의 행적에 초점을 맞출 경우 별다른 이론을 발견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시는 그의 처사적 삶과 교육자로서의 면모를 남김없이 드러내준다.

盥水清泉冷	맑은 샘물에 손을 씻고
臨身茂樹高	무성한 숲 속으로 몸을 숨기네
冠童來問學	관동이 찾아와 학문을 물으니
聊可與逍遙	유유히 더불어 그들과 소요하는구나 ⁶⁹⁾

그의 은거 후 향리에서의 사학활동에 관해서는 다양한 증언들이 남아 있다. 특히 사족 자체들뿐만 아니라 ‘鄉曲賤族’까지 대상으로 하였다는 기록은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 이는 선초의 교육대상이 ‘賤族’까지 포괄하는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쳤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향촌사회에서 아직 신분적 분화가 완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공이 여러 고을의 생도를 모아 이들을 2개의 재로 나누어 수업하였는데, 양반집 후에는 상재(上齋), 마을의 천한 무리는 하재(下齋)로 하여 경사를 가르치며, 그 근타(勤惰)를 시험하였다. 수업받는 생도는 매일 1백 명이 되었다.⁷⁰⁾

나) 우리 고을 선생 길공(吉公) 재(再)는 금오산 아래 집을 짓고 자제를 가르치니, 관동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의 가르침은 물 뿌리고 쓸며 응대하는 절차에서부터 춤추며 노래하는 데까지 미쳤으며, 차례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일찍이 김숙자(金淑滋) 께서도 가서 수업하였다.⁷¹⁾

다) 금오산에 물러나 살면서 고을의 학도들을 모아서 가르쳤다. 재사를 상하의 재로 나누어 양반집 후에는 상재. 시골의 천한 무리들은 하재에 두고 경전과 역사를 가르치며 그들의 권태를 시험하니, 공부하는 무리가 하루에 1백 명씩이나 되었습니 다.⁷²⁾

앞의 인용문에서 후대의 사림파들로부터 특히 주목된 것은 나)에

69) 『治隱先生言行拾遺』上, 「閑居」.

70) 『治隱先生言行拾遺』「備齋叢話」권3, “吉先生再痛高麗之亡, 以門下注書拔緩, 居一善金鰲山下. 誓不仕我朝, 我朝亦以禮待之, 不奪其志. 公聚郡中諸生徒, 分爲兩齋, 以閭閻之裔爲上齋, 以鄉曲賤族爲下齋, 教以經史, 課其勤惰, 受業者日以百數. 公嘗作閑居詩曰, 盥手清泉冷, 臨身茂樹高, 冠童來問字, 聊可與逍遙.”

71) 『治隱先生言行拾遺』, 「彝尊錄語」.

72) 『治隱先生續集』下, 「請隱庶疏」.

실린 김숙자와의 사승관계이다. 이 연원에 근거해 기대승은, “우리나라 학문이 서로 전하여온 차서를 따진다면 몽주로부터 우리나라 이학의 시조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길재는 몽주에게, 김숙자는 길재에게, 김종직은 숙자에게, 김굉필은 종직에게, 조광조는 굉필에게 배워 스스로 원류가 되었습니다”⁷³⁾라고 도통의 계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 길재처럼 사학을 운영한 인물로서 그와 비교할 수 있는 인물로 별동(別洞) 윤상(尹祥, 1373-1455)을 들 수 있다. 그도 만년에 치사한 이후 예천에서 후학들을 교회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윤상이 “78세에 이르러 고향에 퇴로하니 배우는 사람이 구름처럼 모여 들었다”⁷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때 배운 가장 뛰어난 문생이 바로 김숙자이다. 정조는 낙봉서원(洛峰書院)에 원액을 내리면서, “김숙자의 호는 江湖山人인데, 선정신(先正臣) 김종직의 아버지로, 윤상에게 수학하여 그 아들에게 전하였다”⁷⁵⁾라고 명기하고 있다.

윤상은 예천에 유배 왔던 조용(趙庸)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몽주의 문인으로 분류되어 사림과의 일원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엄연히 태조로부터 창업공신으로 포상을 받은 주요한 관인학자의 한 사람이었다.⁷⁶⁾ 세종 때에는 왕세손(王世孫)이 성균관(成均館)에 입학하였을 때 예문제학(藝文提學)으로서 『小學題辭』를 강의하기도 하였다.⁷⁷⁾ 그는 예문제학과 성균사성 등을 두루 역임하고, 퇴관 후 고향인 예천군에 살면서 여러 학생을 가르쳤음을 감안할 때 이 시기 서재의 운영을 사람계열의 전유물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과 어긋나는 평가라 할 수 있다. 즉, 관학파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들에서도 향촌에서의 서재의 운영은 왕성하게 일어났고, 이들도 조선초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당시 교육활동이 매우 광범위한 계층 속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구체적 사례로 성현(成俔, 1439-1504)의 스승이기도 하였던 김구지(金懼知)의 경우를 통해 볼 수 있다.

73) 『治隱先生續集』 下, 「靜菴事實」.

7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4, 醴泉郡 人物條.

75) 『正祖實錄』 11년 3월 己卯.

76) 『太祖實錄』 2년 7월 庚午.

77) 『世宗實錄』 30년 9월 甲申.

김구지(金懼知)의 자는 근부(謹夫)니 개성에서 왔다. 승례문 밖에서 우거하면서 남의 집을 세내어 살고 있었다. 겨우 사서삼경을 알고 있었는데 비록 깊이 이해하지는 못하나 통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역시 과거 공부를 하여 여러 번 초시에 합격하였으나 결국 급제하지 못하였다. (중략) 항상 여항의 어린아이들 수십 패(隊)를 모아서 장랑을 짓고 거처하면서 자각의 능부에 따라 부분을 나누어 가르쳤다. 아침에 모이고 저녁에 흩어지게 하였으며 그중에서 유능한 자를 택하여 유사를 삼았다. 또 直日이라는 직임도 두었다. 그 법은 대략 학궁의 법을 모방한 것이다. 만약 글을 외지 못하는 자가 있거나, 게을러서 글을 안 읽는 자가 있거나, 다투어 서로 욕하고 꾸짖는 자, 스승이나 어른에게 무례한 자, 결석한 자, 지참한 자가 있으면 직일이 글을 써서 유사에게 보고하고, 유사는 스승에게 보고한다. 스승은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보고한다. 열흘만큼씩 시를 짓게 하여 그 고하의 등수를 매겨 뜰에서 이름을 불러 발표하니 사람들이 다투어 부지런하게 힘썼으며, 세시와 명절에는 다투어 술병과 찬합을 갖고 가서 대접하였다. 나와 유우후(柳于後), 이숙도(李淑度), 이자범(李子犯), 유관지(柳寬之)가 다 그의 문하에서 나왔다. 이때에 유사덕(劉師德), 곽신민(郭信民), 유여흥(兪汝欽)도 또한 다 가르치고 있었으나 김군의 부지런함과 엄격함만 못하였다. 조정에서 가장하게 여겨 특히 근직을 제수하였다. 그 뒤에 환관사부(宦官師傅)가 되었다. 환관사부의 임무는 한갓 환관을 교훈할 뿐만 아니라 내종친으로서 아직 출함(出閣)하지 않은 자도 다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⁷⁸⁾

앞의 기록은 조선전기 사학교육에 대한 매우 다양한 정보를 전해 준다. 우선 훈장을 업으로 하는 인물 유형이라는 점이다. 남의 집을 세내어 살 정도로 궁핍하였으나, “항상 여항의 어린아이들 수십 패(隊)를 모아서 장랑을 짓고 거처하면서” 살 정도로 동몽들이 넘쳐 났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경은 18세기에 서울의 도회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중인 신분의 여항문인들이 학관식의 서당 경영을 하던 모습과 방불하다.⁷⁹⁾ 또한 유사와 직월 등을 임명하고, 성적과 근태를 관리하는 등 운영이 매우 체계적이라는 점에서 여타 소규모의 가숙과는 구별된다. 실록에서

78) 『備齋叢話』 권9, 「金懼知」. “金君懼知字謹夫. 自開城來. 寓崇禮門外賃人室而居. 粗知四書三經. 雖不能甚解. 而無所不通. 亦習學子業. 屢入初試. 而竟不第. 爲人純謹樂易. 與人交際無忤禮. 由是朝中名士. 多與之交. 家貧無僮僕. 傭人僕婢爲妾. 常聚閭巷小童數十隊. 作長廊而居之. 隨資之能否. 分門教誨. 朝聚夕散. 擇其中能者. 以爲有司. 又有直日. 其法畧做學宮之儀. 如有不能誦者. 懦慢不讀者. 爭相詈罵者. 無禮師長者. 干到者. 晚來者. 直日書告有司. 有司告于師. 隨其罪之輕重而罰之. 旬時又令作詩. 第其高下. 唱名於庭. 人爭勸勉. 歲時名節爭持壺榼而饋之. 余與柳于後李淑度放翁李子犯柳貫之皆出門下. 是時劉師德郭信民兪汝欽. 亦皆教誨. 而不若金君之勤而嚴. 朝廷嘉之. 特授軍職. 其後得爲宦官師傅. 師傅之任. 非徒教訓宦官. 而內宗親未出閣者. 皆從受訓. 世祖召講書. 金君能通其義. 隨問隨對. 皆適於宜”

79) 정순우, 「18세기 서당연구」(한국학대학원, 1986).

는 그가 벼슬이 정구품 무관직인 사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나타난다. 세조 1년의 기록에서는 “사용(司勇) 김구지가 동몽을 가르쳤는데, 진사(進士) 우진(禹鎭), 생원(生員) 김여고(金汝固), 무거(武舉) 허형손(許亨孫)은 모두 그 문하에서 나왔습니다. 빌건대 유사덕의 예에 의하여 포장(褒獎)하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여 한 자급(資級)을 더하게 하였다”⁸⁰⁾ 라는 기록이 발견된다. 유능한 ‘私置學堂’의 훈장을 국가가 사후에 인정함으로써 그들의 존재를 국가의 관리체제하에 두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유사덕 이외에도 일반에 널리 알려진 확산민, 유여흠 같은 인물 유형들이 다수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아 선초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상당한 수의 ‘私置學堂’들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시기에는 ‘서당’이라는 용례가 거의 대부분 ‘讀書堂’을 지칭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그의 경우에도 ‘書塾’ 등으로 지칭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훈장들은 앞서의 유사덕의 예처럼 군직을 하사받았다가, 차츰 조관(朝官)으로 성장하는 특이한 이력들을 보여주고 있다.⁸¹⁾

환언하면 이 시기에는 아직 다양한 형태의 사학이 그 성격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사, 서재, 서숙, 서당 등이 아직 그 역할이 미분화된 상태에서 운용되었던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우선 그 성격이 서당과 서재 사이에 모호하게 걸쳐져 있던 경우가 있다. 성종조에는 퇴관한 관료가 향리에 서당을 운영하면서 주로 과업교육을 담당한 경우를 볼 수 있다. 당시 서재와 별로 다르지 않다. 경기 관찰사 이철건이 훈회를 힘쓴 광주인 유인달의 행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지난번에 하서를 받들어 자세히 조사하여 물어보았더니, 광주인(廣州人) 유인달(俞仁達)이 지난 경진년에 서부령(西部令)을 그만두게 된 뒤에 집 옆에 서당(書堂)을 짓고 훈회를 시작하였는데, 서생(書生) 최수담(崔壽聃)과 한문창(韓門昌) 등 34인이 와서 수업하여 최수담은 과거에 합격하고, 한문창 등 10인은 생원·진사에 합격하였습니다” 하니, 이조에 명하여 서용해서 장권하게 하였다.⁸²⁾

80) 『世祖實錄』 1年 7月 乙未, “幼學元達貞等五十二人上言: “臣等師司勇金懼知訓誨童蒙, 進士禹鎭, 生員金汝固, 武舉許亨孫皆出其門. 乞依劉思德例褒獎.”

81) 김구지는 후일 성종조에 무관직 중 8품직인 동부주부(東部主簿)에 임명되었다.

82) 『成宗實錄』 3년 4월 甲午, “京畿觀察使李鐵堅啓曰: 頃承下書審問, 廣州人俞仁達, 去庚辰年間, 以西部令見罷後, 構書堂于家傍, 以訓誨爲事, 書生崔壽聃, 韓門昌等三十四人來

상당수의 과거 입격자를 배출한 것은 앞서 살펴본 서재의 역할과 별반 다르지 않으나, 이 경우에는 용례를 서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눌재(訥齋) 박상(朴祥, 1474-1530)이 방문한 청송당(聽松堂) 성수침의 서당은 정사적(精舍的) 서당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⁸³⁾ 정극인(丁克仁, 1401-1481)의 문집에도 자손들을 위하여 향리에 가숙을 두었다는 기록이 보이나, 역시 서재와 다르지 않다.⁸⁴⁾ 조선전기 재지 사족의 재사, 정사, 서당 등은 폐사의 기반 위에서 설립되는 예가 많았으며, 또한 어느 가문을 막론하고 선영의 재사, 별업의 개설 등에는 인근의 불사 내지 승려와 직·간접으로 관련을 맺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사찰과 사학의 운영의 상호 관련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⁸⁵⁾

조선초기 사학이 지닌 이러한 미분화 현상은 16세기 중엽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서원이나 서당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향사 기능을 지닌 서원과는 이미 그 설립의 목적이 뚜렷하게 구별되고 있거니와, 16세기 이후 향내에 설립되는 서당과도 성격상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예로 16세기 안동지역의 경우, 서당은 상당수가 후일 서원으로 이행 발전된 경우가 매우 많고, 서당 설립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모두 당시 안동의 지배 사족으로서 강한 토착적 기반을 가진 인물들이다. 예를 들면 풍악서당(豊岳書堂)의 경우, 가정(嘉靖) 계해년(1563)에 생원 권경진(權景鎭) 등에 의해 설립되어 사전(賜田)을 획급받고, 후일 유성룡 등에 의해 병산으로 이전하였다가 병산서원으로 발전하였다. 풍악서당은 고려시대부터 지방 유생들이 강학해온 곳으로 알려져왔다. 공민왕 10년,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 안동지방에 왔다가 이 서당에서 유생들이 면학하는 모습을 보고 가상히 여겨 사액지와 서책을 하사하였다고 전해진다.⁸⁶⁾ 이때 퇴계의 문인으로서 서당을 설립한 대표적인 인물은 의정서당(義正書堂)을 설립한 구봉령(具鳳齡), 이계서당(伊溪書堂)을 설립한 권대기(權大器), 경광서당(鏡光書堂)을 설립한 권호문(權好文), 가야서당(佳野書堂)을 설립한 김언기(金彦璣), 구담서당(龜潭書堂)을 설립한 김수일(金

受業，壽聃登第，門昌等十人中生員，進士。命吏曹，敍用獎勵。”

83) 『訥齋先生續集』 권4 「聽松堂序」. “故守琛氏頻頻過余，不以衰敗疏外，因修世好，一日，邀余於書堂，無說可謝.”

84) 『不憂軒集』 卷首 「不憂軒家狀草」.

85) 이수근, 「영남 사립과의 在地的 기반」, 『新羅伽椰文化』 12(1981).

86) 『安東市史』, 安東市史編纂委員會(1999).

守一) 등이다. 이들은 모두 퇴계에게서 직접 친자한 인물들이었다. 또한 팔우서당(八耦書堂)을 설립한 배용길(裵龍吉), 봉산서당(鳳山書堂)을 설립한 이개립(李介立) 등은 모두 학봉(鶴峯)의 제자들로서 역시 퇴계와 학맥이 맞닿아 있던 인물들이었다.⁸⁷⁾ 16세기 안동 사림의 일반적 분위기는 제한된 소수의 명문자제들을 대상으로 서당과 정사를 이용하여 촌락 단위로 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⁸⁸⁾ 이 서당들은 안정된 농장적 기반을 토대로 하여 그들의 재지적 기반을 가장 왕성하게 확대하기 위한 거점이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의 서당 혹은 정사형 서재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여말선초의 문집이나 실록에 등장하는 ‘私置書齋’, ‘私置書院’ 혹은 ‘私置書堂’ 등 민간이 개인적으로 운영하였던 다양한 형식의 ‘私置學堂’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말선초에 등장한 ‘私置學堂’은 고려중기의 사학인 구재학당이나 십이공도와는 성격상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12공도를 포함한 고려중기의 사학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강력한 보호와 통제하에 자리하고 있었다. 고려중기의 사학은 고려사회의 귀족제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여말선초에 설립된 ‘私置書齋’ 등은 외방에 거주하는 무역 사족자제로서의 한량 계층이거나 혹은 유생 출신, 혹은 낮은 신분의 퇴관 관료들이 운영하던 자생적인 학당이었고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인정받았다. 14세기 중엽 이후에는 가숙이 사라지고 그 역할을 서재가 대신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 서재는 종래 가숙이 지닌 폐쇄적이고 개별적인 강학공간이 아니라, 주로 퇴관한 문인계층이 설립한 개별적인 수양공간이자 동시에 다수의 문인들이 강학하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었으며, 조선 중기 이후 등장하는 향촌서당의 모태가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나타나는 각종 ‘私置學堂’은 공부과정에 유불선의 세 요소가 공존하는 등 고려조의 독특한 문화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87) 정순우, 「초기 퇴계학파의 서당운영」, 『정신문화연구』 85호(2001.12.).

88) 정순우, 「조선조 영남지역 교생신분과 평민층의 교육참여」, 『한국문화사대계』(영남대출판부, 2000).

한편으로는, 조선전기 서재의 운영이 도통에 근거한 사람계열의 전유물이 아니었음을 별동 윤상의 경우를 통해 구명하였다. 즉, 관학파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들도 향촌에서 서재 운영을 왕성하게 하였고, 이들은 조선초 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았다. 또한 이 시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학이 그 성격이 아직 분화되지 않은 상태로 혼재되어 있었음을 보았다. 여말선초에 등장한 ‘私置學堂’은 16세기 중엽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서당이나 서원의 전 단계로 파악되나, 몇 가지 점에서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말선초에 등장한 ‘私置學堂’은 특정 인물에 의해 주도되지도 않았고, 학파적 성향을 보이지도 않았으며 비혈연적이고 비종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 16세기 중엽 이후 출현하는 서당들은, 사람세력들이 안정된 농장적 기반을 토대로 하여 그들의 재지적 기반을 가장 왕성하게 확대하기 위한 거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전의 사치학당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참 고 문 헌

『江華鄉校志』.

『高麗史』.

『端宗實錄』.

『陶隱先生文集』.

『東國李相國全集』.

『補閑集』.

『不憂軒集』.

『삼봉집』.

『世祖實錄』.

『世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治隱先生續集』.

『治隱先生言行拾遺』.

『燕山君日記』.

『備齋叢話』.

『正祖實錄』.

『太祖實錄』.

『太宗實錄』.

김태영, 「려말선초 성리학 왕정론의 전개」. 『조선시대사학보』 14, 2000.

김호동, 「여말선초 향교교육의 강화와 그 경제적 기반의 학보과정」. 『대구사학』 61, 2000.

박찬수, 「高麗時代の 鄉校」. 『한국사 연구』 42.

이병휴, 「麗末鮮初의 科業教育」. 『역사학보』 67집, 1975.

이병휴 외, 「여말선초의 흥학운동」. 『역사교육논집』 1, 1990.

정순우, 「18세기 서당연구」. 한국학대학원, 1986.

_____, 「조선조 영남지역 교생신분과 평민층의 교육참여」. 『한국문화사대계』, 영남대출판부, 2000.

_____, 「초기 퇴계학파의 서당운영」. 『정신문화연구』 85호, 2001.12.

한영우, 「麗末鮮初 閑良과 그 지위」. 『한국사연구』 4집, 1969.

국 문 요약

본고에서는 아직 학계의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여말선초를 전후한 시기의 문집이나 실록에 등장하는 ‘私置書齋’, ‘私置書院’ 혹은 ‘私置書堂’과 같은 민간이 개인적으로 운영하였던 다양한 형식의 ‘私置學堂’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말선초에 등장한 ‘私置學堂’은 고려중기의 사학인 구재학당이나 십이공도와는 성격상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12공도를 포함한 고려중기의 사학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강력한 보호와 통제하에 자리하고 있었다. 고려중기의 사학은 고려사회의 귀족제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여말선초에 설립된 ‘私置書齋’ 등은 외방에 거주하는 무역 사족자제로서의 한량 계층이거나 혹은 유생 출신, 낮은 신분의 퇴관 관료들이 운영하던 자생적인 학당이었고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인정받았다. 14세기 중엽 이후에는 가속이 사라지고 그 역할을 서재가 대신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 서재는 종래 가속이 지닌 폐쇄적이고 개별적인 강학공간이 아니라, 주로 퇴관한 문인 계층이 설립한 개별적인 수양공간이자 동시에 다수의 문인들이 강학하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었으며, 조선중기 이후 등장하는 향촌서당의 모태가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나타나는 각종 ‘私置學堂’은 공부과정에 유불선의 세 요소가 공존하는 등의 고려조의 독특한 문화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투고일 2010. 9. 20.

수정일 2010. 11. 3.

게재 확정일 2010. 11. 9.

주제어(keyword) 사치서재(private academies), 사치학당(Sachihakdang), 서재(Seojae), 서원(Seowon), 한량(Hanryang), 서당(Seodang)